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등 〉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03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2209503)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등(안 제9조 등)	3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220950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손명수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5. 4. 1.
3. 회 부 일 : 2025. 4.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자격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와 달리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

으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변경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화물 운송 종사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시험일 또는 교육 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23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등(안 제9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u> 1. (생략) 2. <u>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3. <u>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가. ~ 다. (생략) 4. <u>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u> <u><신설></u>	제9조(결격사유)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23조제1항에</u>----- ----- ----- ----- ----- 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가. ~ 다. (현행과 같음) 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3. 제23조제1항에-----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 ----- ----- ----- ----- --. ---, ----- 제6호 ----- ----- -----.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제9조제1항제1호-----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삭제>
7의2. ~ 10. (생략)	7의2. ~ 10. (현행과 같음)
<신설>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u>절차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u>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화물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운송 종사자격(이하 “종사자격”이라 함)을 갖추도록 하면서 그 결격사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종사자격 결격사유(법 제9조) 】

사유	기준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기간	법률상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실제 기준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 면제 (제1호)	2년	없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	없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유	기준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기간	법률상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실제 기준일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제1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제2호)	2년	없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여 운전 면허 취소(제3호가목)	5년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도로교통법」 제43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 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 지된 상태로 자동차등 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3조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 허 취소(제3호나목)	5년		
운전 중 고의 또는 과 실로 3명 이상이 사망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 사고를 일으켜 「도로 교통법」 제93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 허 취소(제3호다목)	5년		
「도로교통법」 제93 조제1항제5호 및 제5 호의2에 해당하여 운 전면허 취소(제4호)	3년		

하지만 법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법률상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개정안은 법 제9조제3호 및 제4호와 같이 기준일을 교육일 또는 시험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9조제1항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무면허 운전 또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조문 표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종사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당시 5년간('18.6.~'23.5.)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통보한 3,264명 중 1,203명이 종사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등 취소 권한을 위임²⁾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자 변경, 종사자격 취소 대상자 주소 이전 등으로 행정처분이 늦어지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의 종사자격 취소처분 없이 곧바로 종사자격이 실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행정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고, 무자격 상태로 계속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불법 상황³⁾을 근절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3) 화물운송 종사자격 없이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나. 국토교통부 의견

자격취득 기준일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즉시 실효시킴으로써 무자격자의 운전업무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0